

#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 2020년도 제4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소집 통지일 : 2021년 1월 21일(목)

2. 회의일시 : 2021년 1월 29일(금) 11:00

3. 장 소 : 광철고 화상회의실

4. 이사정수 : 10명, 재적이사 : 10명

5. 참석자

가. 이사(9명) : 박성호, 서범석, 윤세용, 한석수, 이해정, 전인득, 정두락, 서재석, 김도진

나. 감사(1명) : 오엽록

다. 배석(2명) : 기획인사그룹장 김철현, 경영지원그룹장 최재성

6. 의결안건

가. 정관 변경(안) 나. 이사 선임(안) 다. 이사장 선임(안) 라. 감사 선임(안) 마. 교원 임용(안)

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사. 교육용기본재산 수용에 따른 처분(안)

아.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 2021년도 예산(안)

7. 보고안건

가. 재단 50년사 발간 보고

8. 회의 진행 내용

**의장(이사장 박성호)**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 재적이사 10분 중 9분이 참석하여, 개회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오늘 이사회에서는 '정관 변경(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인 정관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김철현 그룹장 : "붙임1" 내용과 같이 정관 변경(안)을 제안 설명함)

그리고 정관변경 시행일은 2021년 1월 29일부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정관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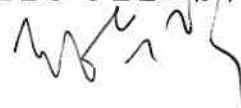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관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의안인 이사 선임(안)입니다. 상정하기 전에 본 건은 저와 서재석 이사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잠시 퇴장하겠습니다. 이사회 진행은 가장 연장자이신 윤세용 이사께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호 이사장, 서재석 이사 퇴장)

**임시의장(윤세용 이사)** 제2호 의안인 이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김철현 그룹장 : 제안 설명)

제2호 의안인 이사 선임(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1년 2월 17일부 서재석 이사님, 2021년 3월 5일부 박성호 이사장님, 2021년 3월 22일부 윤세용 이사님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규정에 이사의 임기는 4년 이내이며 중임 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 승인을 받아 취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 선임(안)입니다. 오늘 선임되시는 이사 두 분의 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1년, 한 분의 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입니다. 이사후보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이사와 서재석 이사의 중임을 추천합니다. 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1년입니다. 서재



석 이사는 법인사무를 관장하는 상근임원으로, 직책은 부이사장으로 위촉하고 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윤세용 이사 후임으로 김성정 前 포철고 교장을 추천 드립니다. 김성정 교장선생님은 포철고 교사와 포철고 교감을 거쳐 광철고, 포철고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4년이며, 김성정 교장선생님은 교육경력자이십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이사 선임(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윤세용 이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임시의장(윤세용 이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사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박성호 이사장께 이사회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이사장, 서재석 이사 입장)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음은 제3호 의안인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김철현 그룹장** : 제안 설명)

제3호 의안인 이사장 선임(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박성호 이사장님이 2021년 3월 5일부로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정관 제22조에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임하며 임기는 2년 이내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금일 선임되시는 이사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6일부터 2022년 3월 5일까지 1년이며 비상임 무보수입니다.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전인득)** 이사장 후보를 제가 추천 드리면 지난 2년간 교육재단의 어려운 내·외부 환경속에서도 재단을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주고 계시는 박성호 이사장님의 연임을 추천합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전인득 이사님이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추천하실 분이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추천에 동의합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추천에 동의하심에 따라 본인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의안인 감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김철현 그룹장** : 제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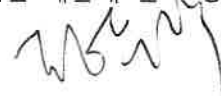
제4호 의안인 감사 선임(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정경진 감사가 포스코 인사이동으로 사임하여 후임 감사를 선임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규정으로 감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임 되시는 감사 임기는 관할청 승인일로부터 3년입니다. 감사 후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진 포스코 정도경영실장을 추천드립니다. 김성진 정도경영실장은 1991년 2월에 포스코에 입사하여 현재 정도경영실장을 맡고 계십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감사 선임(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호 의안인 교원 임용(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김철현 그룹장** : 제안 설명)

제5호 의안인 교원 임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교장 중임입니다. 제안사유는 포철고, 포철중 교장이 2021년 2월 28일부로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코자 합니다. 포철고 박석현 교장을 2021년 3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인 2022년 8월 31일까지 포철중 강순원 교장을 2021년 3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인 2022년 2월 28일까지 임명코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장, 교감 선임입니다. 제안사유는 2021년 2월 28일부로 포철초 류미경 교장과 광철초 이영배 교감, 2021년 8월31일부로 광철초 임종현 교장 정년퇴직에 따른 후임을 선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 사항입니다. 먼저 교장선임은 재단내 현 초등교감 3명을 후보자



로 서류심사를 거쳐 외부인사를 포함한 교장선임위원회 통해 학교경영계획 프레젠테이션 및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상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감선임은 학교장이 추천한 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교감후보자 7명을 선정한 후 자체 심의위를 구성하여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상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임결과, 초등교장으로는 포철초 정형권 교감이 선정되었으며 포철지초 교장직무대리로 임명코자 합니다. 2021년 2월중 교장자격 취득 후 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정년퇴직 예정일인 2023년 8월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초등교감으로 포철초 정해경, 광철남초 최영대 교사가 선정되었으며 포철초 정해경 교사를 포철초 교감직무대리로, 광철남초 최영대 교사를 광철초 교감직무대리로 임명코자 합니다. 임명일은 2021년 3월 1일부이며 2022년도 중 교감연수실시 후 자격취득시 교감으로 임명코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장, 교감 내정자입니다. 초등교장 내정자로 광철남초 조한철 교감이 선정되었으며, 초등교감 내정자로 포철지초 김영희 교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임명내용은 2021년 7월 이사회시 결정할 예정이며, 임용예정일은 2021년 9월 1일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장 전보 사항입니다. 포철지초 김현수 교장을 포철초로 전보코자 합니다. 임명일은 2021년 3월 1일부입니다.

다음은 교원 신규채용으로 올해 총 1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당초 중등 10명, 초등 6명 총 16명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중등 기술과목에서 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등 합격자가 1명만 발생되어 최종 1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채용사유는 각급학교 퇴직교원 발생으로 인한 충원 및 기간제교사 적정비용 운영을 위함입니다. 전형은 1차전형(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여 5배수를 선정하였고, 2차전형부터는 자체적으로 수업 및 실기심사, 그룹토론을 실시하여 3배수 선정, 최종 3차전형으로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종합격자를 학교급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학교입니다. 포철고 생물 박보경, 지구과학 김태훈 / 포철공고 기계 황준성 / 포철중 국어 최진규, 수학 임승아, 이현호, 도덕 윤리 김병훈, 체육 안진우, 가정 이아희 선생님께서 최종합격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로 포철초 서지윤 선생님께서 최종합격 하였습니다. 임용일은 2021년 3월 1일부이며, 합격자의 임용포기 및 범죄조회 등 결격사유 발생시 임용취소 하고자 합니다. 임용 취소시 차점자 추가합격 또는 기간제 교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원 명예퇴직입니다. 금회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총 11명으로 중등 8명, 초등 3명입니다. 명예퇴직 대상자를 학교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철고 영어 김운태, 수학 전용준 / 포철공고 수학 한재식 / 포철중 정보 박준화 / 광철고 영어 이용현, 역사 이은철, 물리 송선희 / 광철중 가정 임은옥 / 포철초 정보 이성희 / 포철지초 정보 임은경 / 광철초 정보 정찬애 선생님이시며, 명예퇴직일은 2021년 2월28일부입니다. 명예퇴직을 하시는 중등 교원은 공립학교의 경우와 같이 동일부 교감으로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원 전보입니다. 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원 전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보 대상자는 중등 14명, 초등 17명으로 총 31명을 전보하고자 하며 해당 학교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중등교사 14명에 대한 전보입니다. 포철고 체육 배치현 선생님을 포철공고로, 지리 유종철, 국어 이현세, 조혜원, 화학 박기현, 한문 권용진 선생님을 포철중으로 / 포철중 국어 차봉기, 김상희, 화학 박정원 선생님을 포철고로, 수학 권홍근 선생님을 포철공고로 / 광철고 영어 정태훈, 가정·정보 안효순, 생물 김해식 선생님을 광철중으로 / 광철중 영어 이선주 선생님을 광철고로 전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사 17명에 대한 전보입니다. 포철초 윤혜자, 한미정, 박연홍, 남택언, 이학승, 박소윤 선생님을 포철지초로 / 포철지초 추수옥, 소정흠, 김나현 선생님을 포철초로, 윤성욱 선생님을 광철남초로, 최희영 선생님을 포철중으로 / 광철초 정유성, 조향순 선생님을 광철남초로 / 광철남초 이난실, 장영임, 임순화 선생님을 광철초로, 윤순이 선생님을 광철고로 전보하고자 합니다. 임용일은 2021년 3월 1일부입니다. 다음은 타 사립 파견교원 임용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포항권역내 사립학교 교원의 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내 사립학교 법인간 인사교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기존 사립학교의 과원 발생시 공립으로의 파견제도를 운용하였으나 학생수 급감으로 공립에서도 과원교사 수용이 어려워 사립학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합니다. 현재 포항지역 사립학교 과원 현황은 4개교 8명입니다. 추진경과로는 2020년 11월에 경북교육청에서 사립학교 법인간 인사교류를 요청하였고 지역내 발생된 과원에 대해 포항지역 학교법인에서 각 1명 정도 파견 수용 요청을 하였습니다. 타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수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포철중 국어 및 기술·가정 교과에서 기간제교사 TO에 파견 수용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어 타 사립학교 교원 2명을 포철중으로 파견 임용하고자 합니다. 파견 임용 대상자로는 현재 포항 세화고에 소속되어 있는 피수연 선생님과 포항 흥해중에 소속되어 있는 권오식 선생님이로 임용기간은 피수연 선생님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6개월, 권오식 선생님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간입니다. 다음은 교원 면직입니다. 포철중 이민용 선생님과 포철초 김민정(개명전 김지혜) 선생님께서 개인사유로 의원면직 신청을 하시어 관련절차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확인 후 의원면직 하시게 되었습니다. 면직일은 2021년 3월 1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휴·복직 사항입니다. 먼저 휴직연장 및 휴직 사항입니다. 현재 휴직중인 포철초 김은경 선생님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동반휴직 연장, 포철공고 박은영, 광철중 김지연 선생님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 연장, 인천포스코고 유아라 선생님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 5개월 15일간 육아휴직 연장, 포철공고 흥해민 선생님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육아휴직 연장 예정입니다. 또한 광철고 권미숙, 박은주 선생님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자율연수휴직, 포철고 박동철, 홍제웅, 포철공고 박성규 선생님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 포철공고 안성호 선생님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 포철중 이현숙 선생님은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 1개월 4일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직 사항입니다. 광철고 최미혜 선생님 질병휴직 만료, 김유리 선생님 육아휴직 만료, 인천포스코고 김진아 선생님, 황보현정 선생님 육아휴직 만료, 포철초 이종승 선생님 질병휴직 만료로 2021년 3월 1일부 복직 예정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교원 임면(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원 임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6호 의안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김철현 그룹장 : 제안 설명)**

제6호 의안인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임사유는 2021년 3월 22일부 임기만료 예정인 윤세용 이사에 대한 후임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학교위원 2명, 법인위원 3명, 외부위원 1명, 총 6명으로 구성됩니다. 현 윤세용 이사님 후임으로는 재단 이사로 신규 선임되신 김성정 이사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임기는 재임기간입니다. 선임일은 2021년 3월 23일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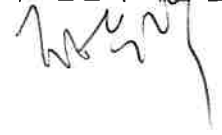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없이 전원 찬성하시므로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호 의안인 교육용기본재산 수용에 따른 처분(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최재성 그룹장 : 제안 설명)**

제7호 의안인 교육용기본재산 수용에 따른 처분(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포항 양학근린공원 조성 사업 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학교부지 일부를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대상학교의 학교운영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인 정관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결





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교육용기본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재산은 포철공고의 포항시 지곡동 477번지 일부면적 1,149제곱미터이며, 수용보상액은 4.7억원입니다. 그리고 포철공고의 포항시 지곡동 산31외 3필지 일부면적 15,409제곱미터이며 수용보상액은 18.4억원입니다. 총 수용면적은 16,558제곱미터, 수용보상액은 23.1억원으로 표준지공시지가 7.4억원 대비 3.1배입니다. 수용되는 토지는 대상학교의 자연녹지지역의 일부분에 해당되며, 새로 조성 될 공원은 기존 산림의 큰 훼손 없이 기존 산책로를 정비 또는 보수할 예정으로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대금 및 처분방법은 포항시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인 ㈜세창과 수용보상액으로 수용계약하여 처분 할 예정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는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보상액은 감정평가법인 3사의 감정평가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대금 활용계획은 대상학교의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학교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의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사용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교육용기본재산 수용에 따른 처분(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용기본재산 수용에 따른 처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호 의안인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최재성 그룹장 : "붙임2" 내용과 같이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함)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호 의안인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세요.

(최재성 본부장 : "붙임3" 내용과 같이 2021년도 예산(안)을 제안 설명함)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은 모두 심의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안건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김철현 그룹장 : 제안 설명)

보고 안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재단 50년사 발간'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발간 목적은 재단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재단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입니다. 편찬기간은 지난해 4월에 시작하여 올해 1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편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서재석 부이사장을 편찬위원장으로 하고, 각급학교 학교장과 법인그룹장을 편찬위원 각급학교 교사 1명 및 법인 담당자를 집필위원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50년의 기억, 100년의 미래 포스코교육재단 50년사'라는 제호로 머리글에 발간사, 화보 등을 실고 재단사에는 재단 및 학교의 설립배경, 성장 및 도약, 혁신활동 학교사에서는 학교 설립 및 개교, 주요교육활동과 성과, 부록에서는 각종 현황 등을 담았습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이며, 책자사양은 A4형태, 분량은 300면입니다. 역대 이사장 및 임원, 포스코, 교육기관 및 지역기관, 각급학교 교직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 전원 "없습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출석임원을 대표하여 간서명 하실 임원으로 전인득 이사님, 정두락 이사님, 서재석 이사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사장 박성호)** 이상으로 학교법인 포스코교육재단 2020년도 제4회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 2021년 1월29일 12:30)

# #붙임 1 (제 1 호 의안 정관변경)

현 행	개 정
<p>제9조 (회계의 구분) 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p>	<p>제9조 (회계의 구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u>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u>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u>이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u> 이사장이 집행한다.</p>
<p>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u>사립학교법 제21조제2항 해당부</u>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② (생략)</p> <p>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p> <p>④ ~ ⑧ (생략)</p>	<p>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u>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li> <li>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li> <li>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li> </ol> <p>④ ~ ⑧ (현행과 같음)</p>
<p>제21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제1조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법인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p>	<p>제21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 개방이사는 제1조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법인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인의 설립자</li> <li>2. 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li> <li>3. 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li> <li>4.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li> </ol>

현행	개정
<p>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등)</p> <p>① ~ ② (생략)</p> <p>1 ~ 4 (생략)</p> <p>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임면</u>에 관한 사항</p> <p>6 ~ 8 (생략)</p> <p>③ (생략)</p>	<p>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임용</u>에 관한 사항</p> <p>6 ~ 8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2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u>3월간</u>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31조의2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u>1년 동안</u>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이사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p>
<p>제35조 (<u>임면</u>)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면</u>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④ 학교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면</u>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휴직·복직, 의원면직, 정년 및 당연 퇴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임면</u>권자가 교원을 <u>임면</u>하였을 때에는 <u>임면</u>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5조 (<u>임용</u>)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용</u>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학교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용</u>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휴직·복직, 의원면직, 정년 및 당연 퇴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임용</u>권자가 교원을 <u>임용</u>하였을 때에는 <u>임용</u>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제37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u>임면권자</u>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p> <p>2 ~ 12 (생략)</p> <p>② (신설)</p>	<p>제37조 (휴직의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u>임용권자</u>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u>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u>)</p> <p>2 ~ 12 (현행과 같음)</p> <p>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동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한다)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6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u>임용</u>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제외한다)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교원의 <u>임면</u>에 관한 사항</p> <p>2 ~ 4 (생략)</p>	<p>제4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교원의 <u>임용</u>에 관한 사항</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88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p> <p>③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중에서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88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p> <p>③ 위원의 임기는 1년 또는 2년중에서 당해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되 <u>임기가 1년일 경우 2차, 2년일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Handwritten signatures and initials in blue ink.



#붙임 2 (제 8 호 의안)

##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단위: 억원)

구 분	'20.예산	'20.추경	증 감	증감 내역
<b>수 입</b>	1,180	1,537	357	
국고보조금	392	499	107	재정결함보조금 + 7억원(315→322억원) 목적사업보조금 +100억원(77→177억원)
포스코그룹 기부금	137	136	△1	포스코기부금 - 1억원(120 → 120억원) 포스코건설 등 기부금 △1억원(17 → 16억원)
학생납입금	136	134	△2	
기금수입 및 기타수입	64	116	52	수익용기본재산 이자수입 및 배당금 △6억원(58→52억원) 투자자산처분이익 +20억원(0 → 20억원) 교육용기본재산 수용 등 기타수입 +38억원(6→44억원)
포철서초 부지 매각수입	313	520	207	포철서초 매각수입 +207억원
수익자부담교육비	137	59	△78	학교급식비 △37억원(73→36억원) 방과후교육비 △18억원(22→4억원) 현장학습비 △16억원(16→0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기타 △7억원(26→19억원)
전기이월금	1	73	72	이월보조사업비 +67억원(0 → 67억원) 전기잉여금 + 5억원(1 → 6억원)
<b>지 출</b>	1,180	1,537	357	
인 건 비	548	547	△1	임·교직원 인건비 △8억원(487 → 479억원) 교직원 명예퇴직금 +7억원(0 → 7억원) 법정부담금 등 -1억원(61 → 61억원)
일 반 관 리 비	136	233	97	목적사업보조사업비 +95억원(70→165억원) 일반경비 +2억원(66→68억원)
학교교육기자재구입비	2	15	13	교육기자재 보조사업비 +6억원(0→6억원) 교육기자재 자체사업비 +7억원(2→9억원)
학교시설사업비	43	108	65	교육정보화 학교시설사업 +63억원(29→92억원) 경상시설유지비 +2억원(14→16억원)
포철서초 부지 매각대금 활용	313	520	207	수익용기본재산 투자 +207억원(118→325억원) 시설투자 등 보통재산 활용 -1억원(195→195억원)
기타투자비	-	50	50	포스코주식 처분이익 및 잉여금 활용 투자 +46억원 골프회원권 매각대금 수익용기본재산 재투자 +4억원
수익자부담교육비	137	59	△78	수입내역과 동일
차기이월금	1	5	4	

# 붙임 3 (제 9 호 의안)

## 2021년도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20.추경	'21.예산	증 감	증감 내역
<b>수 입</b>	1,537	1,035	△502	
국고보조금	499	398	△101	재정결함보조금 + 6억원(322→328억원) 목적사업보조금 △107억원(177→70억원)
포스코그룹 기부금	136	87	△49	포스코기부금 △50억원(120 → 70억원) 포스코건설 등 기부금 +1억원(16 → 17억원)
학생납입금	134	154	20	자사고 학운비 인상 등 +20억
기금수입 및 기타수입	116	68	△48	수익용기본재산 이자수입 및 배당금 +8억원(52→60억원) 투자자산처분이익 △20억원(20 → 0억원) 교육용기본재산 수용 등 기타수입 △36억원(44→8억원)
포철서초 부지 매각수입	520	-	△520	포철서초 매각수입 △520억원
보통재산 투자 만기	-	199	199	포철서초 부지 매각대금 활용 보통재산 투자 만기 153억원 POSCO 주식 처분이익 및 잉여금 활용 보통재산 투자 만기 46억원
수익자부담교육비	59	124	65	학교급식비 +29억원(36→65억원) 방과후교육비 +14억원(4→18억원) 현장학습비 +17억원(0→17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등 기타 +5억원(19→24억원)
전기이월금	73	5	△68	이월보조사업비 △67억원(67 → 0억원) 전기잉여금 △ 1억원(6 → 5억원)
<b>지 출</b>	1,537	1,035	△502	
인 건 비	547	539	△8	임·교직원 인건비 +6억원(479 → 485억원) 교직원 명예퇴직금 △7억원(7 → 0억원) 법정부담금 등 △7억원(61 → 54억원)
일 반 관 리 비	233	118	△115	목적사업보조사업비 △106억원(165→59억원) 일반경비 △9억원(68→59억원)
학교교육기자재구입비	15	5	△10	교육기자재 보조사업비 △6억원(6→0억원) 교육기자재 자체사업비 △4억원(9→5억원)
학교시설사업비	108	37	△71	교육정보조 학교시설사업 △66억원(92→26억원) 경상시설유지비 △5억원(16→11억원)
포철서초 부지 매각대금 활용	520	153	△367	수익용기본재산 투자(△325억원) 등 부지 매각대금 활용 △367억원
기타투자비	50	56	6	포스코주식 처분이익 및 잉여금 활용 투자 +6억원(50→56억원)
수익자부담교육비	59	124	65	수입내역과 동일
차기이월금	5	3	△2	

학) 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박성호 (박성호) 이사 서범석 (서범석)

이사 윤세용 (윤세용) 이사 한석수 (한석수)

이사 이해정 (이해정) 이사 전인득 (전인득)

이사 정두락 (정두락) 이사 서재석 (서재석)

이사 김도진 (김도진) 감사 오엽록 (오엽록)